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채수지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재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, 학교장이 이미 허가한 시설 사용을  
별다른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
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, 학부모,  
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, 더 나아가 학교  
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할  
필요가 있는 경우, 해당 허가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

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- 이 개정안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혼선을 줄이고, 학교 운영의 신뢰성과 시설 개방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신뢰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,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